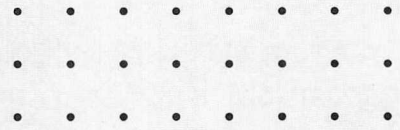




환경부공고 제2007-373호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 1. 개정이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8208호, 2007. 1. 3 공포, 2008. 1. 4 시행예정)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자 2등급 응시자격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여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인 자”와 동일한 응시자격이 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41조 별표 3)
-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자 자격검증시험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을 1차 시험의 합격기준(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42조제2항)
- 다. 수도사업자가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할 항목중 업체의 공지기준을 수도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기준 수준으로 조정함(안 제47조 별표4)
- 라. 「수도법」 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 관련내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함(안 제65조)

### 3. 의견제출

이 수도법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77, FAX : 02)507-2456, e-mail : jazzgo@me.go.kr)

환경부 공고 제2007-367호	• • • • • • •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 • • • • • • •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 • • •

2007년 10월 22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지하수법」개정(법률 제7569호, 2005. 5. 31 공포, 2005. 11. 30시행)에 따라 지하수 정화업 등록업무 등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기수질검사 제외대상 정비 등 현행 규제사항을 완화·합리화하고,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범위 확대, 전자적 처리방식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침수나 지표수 유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밀폐식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및 별표1)
- 나.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의 조치명령 완료통보서 제출 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연장함(안 제3조)
- 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여 정화명령을 받은 주유소를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새롭게 포함시킴(안 제4조 및 별표2)
- 라. 생활용수 중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 및 사용 생태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만 이 용하거나 지하수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수질검사 면제(안 제10조)
- 마. 전자적 처리방식 확대(안 제15조, 16조)

환경부 공고 제2007-361호	• • • • • •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2007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사업장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지속적 관리 필요에 따라 일몰 규제로 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부칙(법률 제20244호, 2007. 9. 6) 제3조(유효기간)를 삭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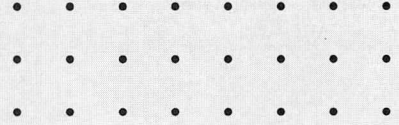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부칙(법률 제20244호) 제3조(유효기간)를 삭제



환경부령 제252호 (2007.10.25일 공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2007년 10월 18일 공포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

- ※보다 자세한 법률의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http://www.me.go.kr)→법률마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및 시·도지회에서는 개정된 수질·대기·폐기물 관련 법규 해설세미나를 11~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경영원입니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S) 도구(T) 도움말(H)

뒤로 앞으로 중지 새로고침 홈 검색 즐겨찾기 미디어 기록 메일 인텔링 검색

주소(1) http://www.bisd.or.kr/ 이동 연결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통합검색 검색 상세검색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홈페이지 안내

### www.bisd.or.kr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우리 기업들이 환경경영 / 국내외환경규제 / 기후변화 등 각종 환경관련 정보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홈페이지([www.bisd.or.kr](http://www.bisd.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체제 구축 지원을 통해 환경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환경경영 지원사업의 참여를 안내하고 있으며, 수도권특별법, 자원순환법 등 국내환경규제 법률 관련 기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건의 제안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RoHS(유해화학물질 제한지침), WEEE(폐전기전자재활용지침) 및 REACH 등 무역환경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RoHS 및 REACH의 경우 기업 제품의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자가진단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각종 교육, 세미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동 사이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TEL 02-6050-3805 / FAX 02-6050-3810, E-MAIL [admin@bisd.or.kr](mailto:admin@bisd.or.kr))으로 연락하여 시스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